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13)**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도소매(525910)	비정기	100억원대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대상자는 '△△년 △월 부산에서 개업한 무인사진관 '△△ △

Text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년말 가맹점 약 000개가 등록
되었으며 '△△.△월 △△ △△으로 사업장 이전함

Text - 사진기 기계 판매 대금, 인화지 등 부자재 납품 수입 및 가맹점 서버

Text 관리 수입을 주요 매출로 하여, '△△년 수입금액 00억원에서 '△△년

000억원으로 단기간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 △위로 부상하였으나 '△△년에는 00억원으로 감소함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I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시실과다른세금계산서	20402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인
	2	가지급금 인정이자	10703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적출
	3	공사 소개비 수입 누락	10101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리베이트 수입 신고 누락 적출
	4	과다공제 경비	11201	인수 가맹점 수익권 대가 과다 공제 부인
	(5)	가공 인건비	1050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 가공 인건비 계상

Text 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등에 대해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 Text 계산서 수취 등 00억원 적출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Text ○ 세금계산서 및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시하여 직고발(10조) 및 통고처분

Text Ⅱ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코드: 20402)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과거 스티커사진과 유사한 무인 사진관이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자

Text <a> △△△△△·라는 브랜드로 무인사진관 가맹본부를 시작하여 개업

^{Text} △년 만에 전국 가맹점 000여개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Text 매출액이 급증함

Text -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급작스러운 조세 부담 증가를 회피하고자

Text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하려는 사례가 많았던 것에 착안

Text 하여 실제 유효한 거래를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Text 검토하던 중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매입이 다수 확인되어 세금계산세

Text 수취 내역과 거래의 내용을 상세 검토함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및 판례·심판례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Table 판례 국심-2006-서-1084 (2006. 9. 22)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

Table 판례 조심-2015-전-3693 (2015. 11.13)

거래업체와 대표이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내부자료 외에 건설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Table 판례 심사-부가-2022-0006 (2022. 5. 11)

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 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Table 판례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 5. 16)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1)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 분석

Text ○ 조사대상법인은 ㈜ ● ● ● ● ● 의 5개 업체로부터 'HPRSS

Text RS-I(고급레이싱 체험기기)', '시뮬레이터 교육', '컨설팅 수수료',

Text '인테리어 공사' 등의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원 및

Text <mark>수정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mark>

Text <mark>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함</mark>

Text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거래처별) >

(백만원)

Table

地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품목	[매입금액	
근모	0 ±	기대자인호		古「	합계	당초	수정
		0,000	0,000	△0,000			
0	(70000000	111-11-11111	\triangle	사물까터 및 교육	000	0,000	△0,000
0	(A) (D	222-22-22222	\triangle	시뮬레이터 및 교육	000	000	△000
8		333-33-33333	000	홍보대행,컨설팅	000	000	_
4		444-44-44444	000	개발 및 경영컨설팅	000	000	-
6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555-55-55555	000	인테리어공사	00	00	_
0	** **	666-66-66666	000	인테리어공사	000	000	-

Text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세기간별) >

(백만원)

Table

개체	구분	합계	'20.271	'21.17	'21.27	'22.17	'22.27	'23.17	'23.27
	계	0,000	000	000	000	0,000	△0,000	000	_
합계	당초	0,000	000	000	000	0,000	0,000	000	0,000
합계	수정	△0,000	_	1	1	_	△0,000	_	△0,00 0
	계	000	000	000	000	0,000	△0,000	_	_
0	당초	0,000	000	000	000	0,000	0,000	_	000
	수정	△0,000	_	_	_	_	△0,000	_	$\triangle 000$
	계	000	_	00	000	_	_	_	_
2	당초	000	_	00	000	_	_	_	000
	수정	$\triangle 000$	_	_	_	_	_	_	$\triangle 000$
®	당초	000	_	_	_	_	000	_	_
4	당초	000	_			_	_	000	_
6	당초	00	_	1	1	_	_	00	_
6	당초	000	_	_	_	_	_	000	_

Text - 고급레이싱 체험기기와 시뮬레이터 교육 등은 무인사진관 업종과

Text 무관한 항목임에 착안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

Text 등 거래처의 매입 현황등의 신고 내역을 검토함



Text * 자동차 시뮬레이터 HPRSS RS-I

Text ② 두 업체는 대표자가 △△△으로 동일하며 ☞ 두 업체의 매출 및 매입

Text 내역 분석 결과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만한 매입 내역이 없고 ☞ 대표자

Text △△△ 외 근로를 제공할 만한 고용인력이 없으며 ☞ 무엇보다 두 업체

Text 모두 조사대상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중으로

Text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Text 판단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함

Text - ('체험기기' 납품 여부 확인불가) 당시 체험기기를 공급받았던 송장·

Text 보관장소와 현재 체험기기의 이용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Text 요청한 결과, 당시 레이싱 체험기기 거래 협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Text 체험기기 실물은 ㈜⑩⑪⑪⑪⑪의 △△공장에 점유개정의 형태로

Text 보관중이다가 '△△년도 ⑩⑩⑩⑪ 공장 화재당시 체험기기가

Text 소실되었다며 제시한 화재 증명원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Text - ('시뮬레이터 교육' 용역 확인불가) 시뮬레이터 교육을 실시한

Text 교육자 및 교육일자 등의 교육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Text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Text ○ ▲ ▲ ▲ ▲ ▲ ▲ 외 3군데 거래처 거래(③~⑥거래)

Text 2) 금융조사 실시

Text ○ 가공 매입 혐의의 정황을 분명히 하고자 조사대상법인과 대표자 ●

^{Text} ●● 및 ●●●와 거래한 주변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Text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을 상세 대조한 결과,

Text 조사대상법인의 결제 대금이 대금흐름 I,Ⅱ의 방식으로 거래처 및

Text 거래처 대표자(△△△ 등)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결국

Text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Text 대표자 ●●●는 그 자금을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Text <mark>사실을 확인함</mark>

Text - (대금흐름유형 I) 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이(②) 매입 거래처

Text 대표자 계좌로 출금된 직후(③) 대표 ●●●의 개인계좌로 재입금

Text 됨(④)

Text < 매입세금계산서 대금흐름 예시 I >

(원)

							(건)
Table	거래일자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시간	출금	입금
		1	조사대상법인	(농협) #####	12:50:44	00,000,000	
		2	(₹®®®®®®	(국민) ####	12:50:44		00,000,000
	/20.12.0	2	(₹®®®®®®	(국민) ####	12:54:43	00,000,000	
	'20.12.8	3	$\triangle \triangle \triangle$	(새마을금고) #####	12:54:43		00,000,000
		3	$\triangle \triangle \triangle$	(새마을금고) #####	12:57:14	00,000,000	
		4	•••	(우체국) ####	12:57:14		00,000,000

Text - (대금흐름유형 Ⅱ) 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이(②) 거래처 대표자

Text 또는 배우자(▲▲▲) 계좌로 출금된 직후(③) 대표 ●●●의 개인

Text 계좌로 재입금되거나(④), 대표 ●●●의 지인 (●●●, ◎◎◎)의

Text 계좌를 거쳐(②) 대표 ●●●의 개인계좌로 재입금됨(④)

Text < 매입세금계산서 대금흐름 예시 II >

(원)

Table	거래일자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시간	출금	입금
		1	조사대상법인	(농협) ####	20:08:30	000,000,000	
	'20.12.17	2	(TOOOOO	(국민) #####	20:08:30		000,000,000
		2	(TOOOOOO	(국민) #####	20:13:25등 6건	000,000,000	
		3	▲▲▲ (△△△ 처)	신한 ####	20:13:25 등 2건		00,000,000
		3	$\triangle \triangle \triangle$	하나 #####	20:13:27 등 4건		00,000,000
		3	$\triangle \triangle \triangle$	하나 #####	20:13.27등	00,000,000	
		3	$\mathbf{\Lambda}\mathbf{\Lambda}$	신한 ####	20:28:34	00,000,000	
		4	•••	(우체국) ####	20:28:34		00,000,000
		\odot	(●●● 星)	농협 ####	20:34:26		00,000,000
		Ð	©©© ⊠#\#!! #}	(농협) ####	20:40:41		00,000,000
	' 20.12.24	7 4		(우체국) #####	14::25:56		00,000,000
	(20.12.26	Ð	©©© ⊗#\#\#\#\	(농협) ####	11:44:17	00,000,000	
	'20.12.26 -	4	•••	(우체국) ####	11:44:18		00,000,000

Text < 포탈 혐의 세금계산서 및 관련 금융거래 귀속자 내역 >

(백만원)

(△△△ 관련 거래)

Та	hl	ما

able	세	금계산서 팀	발행 내역	1	금융	거래내역 (공	'란은 입	금, △은	은 출금)
	발급 업체	발행 시기	공급 대가	합계	조사대상 법인		•••	000	••••	그 외 (7설명)
		2020.27	000			000				
		2021.17]	000				0,000			
		2021.27	000	0,000	△0,000			000	△0	000
	0	2022.17]	0,000							
	(주) ((0) ((0 ((0 ((0) ((0) ((0 (((0 ((0 (((((((((((((((2022.27]	0,000							
		2022.2기 수정	△0,000	△0,000	000		△000	△000		
		2023.27]	△0,000							
		2023.2기 수정	0,000	상계						
			합계		△0,000	000	0,000	△000	△0	000
	•	2021.1	00	000	△000	000	000	△000		
	9	2021.2	000	000		000	000	<u> </u>		
	㈜⊕⊕	2023.27]	△000							
		2023.2기 수정	000	상계						

Text <mark>(○○○ 관련 거래)</mark>

Table

_	<u>, </u>	, ,,	_							
le	발급 업체	발행시기	공급 대가	합계	조태/밥	000	•••	000	••••	그 외
	3 	2022.27]	000	000	△000	00		000		
	4	2023.1	000	000	△000	00	000	0		
	(디자인	업체 거래)							
	발급 업체	발행시기	공급 대가	합계	조태(법)	디자인업체	•••	000	•••	그 외
	6 \\\\\\\\\\\\\\\\\\\\\\\\\\\\\\\\\\\\	2023.17	00	000	△00	0	0	00		
	6 • • • • • • • • • • • • • • • • • • •	2023.17	000	000	△000	00	00		00	

Text (합계)

Table	발급 업체	발행시기	공급 대가	합계	조태(법)	거래상대방 관련인	•••	000	∞	그 외 ([[발])
	최종합계			0,000	△0,000	000	0,000	△00	00	000

Text 3) 범칙조사 실시 및 심문조서 징췌

- Text (범칙조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질서 문란 유발

 Text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내용에 대하여

 Text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세포탈범칙

 Text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함
- Text
 ○ (심문조서 징취)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

 Text
 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해 '△△.△.△.에

 Text
 대표자 ●●●에 대해 심문조서를 징취함

Text 나. 납세자 주장

- Text 조사대상법인은 <❸~⑥>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Text 하였으나 <①,②>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함
- Text 2) 레이싱 체험 기기를 추가적인 가맹점 아이템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Text 레이싱 체험 기기 관련 우선사업권 지분 확보 차원에서 레이싱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미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나, 이후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지급액 중 상당금액을 일종의 에스크로 목적으로 돌려받아 보관한 것임
- Text 3) 전략적 제휴를 해지하면서, △△△△년도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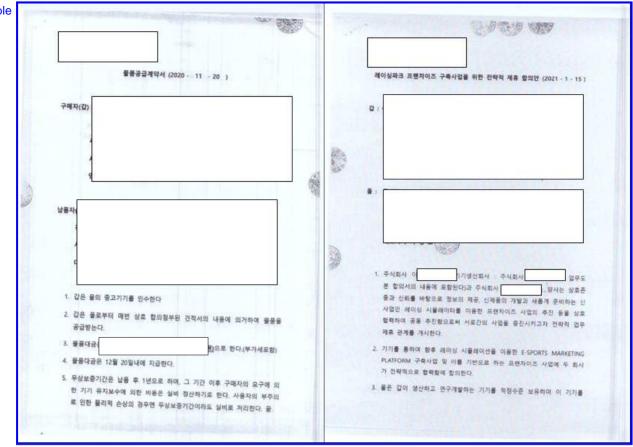
 Text 지급액은 추후 사업 재기시 납세자가 우선협상권을 보유하는 조건
 으로 원상회복 없이 마무리한 것임
- Text 4) 전략적 제휴가 해지됨에 따라, ●●●는 보관금을 납세자에게 반환

 Text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환지연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Text 5) 납세자와 ⑥ ⑥ ⑥ ⑥ ⑥ ⑥ 및 ⑩ ⑪ ⑪ ⑪ ① 간 계약서 등 증빙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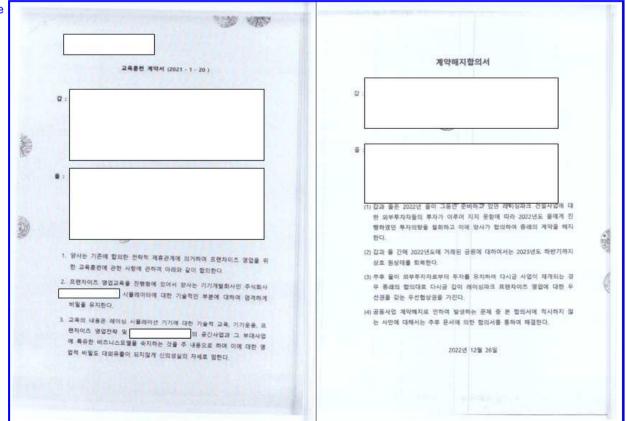
 Text 하고 공동사업 합의 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료상' 거래와는 분명 차이가 있음

Text < 납세자가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전략적 합의서 >

Table



Table



Text < 파주공장 화재 관련 자료>

제 2	06 호						
	호	가 재 증 명 원					
신청인	성 명 (법인명 또는 기관명)						
	주 ☆	경기도 성남시 등					
	일 시	2024-					
화재발생 개 요	장소 및 영칭	경기도 10-70)					
	원인	부주의/쓰레기 소각					
	소재지	경기도 1 10-70) 1					
화재피해	소유자 • 관리자						
대 상	명 침						
	구조 및 규모	양식(육)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1층 지하0층 180㎡					
	등 산	- 포터 II 영바디(86저4486) 부분소, - 모니터, 컴퓨터, 시울 레이선기, 공구류 및 집기류, 가제도구 등 소실					
피해내용	부 동 산	양식(목) 철골조 센드위치패널 1동 지상1층 지하0층 소실면 적:360㎡ 그을음면적:0㎡					
	인명피해	사망 1 명,부상 0 명					
A.	용 목 적	세무사 사무실 제출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경기도 분당소방서장 [리한등]					

Text 다. 조사팀 과세 논리

Text 1)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거래임

- Text 조사대상법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위해 레이싱 기기와
- Text 교육훈련비를 매입했고 이를 당장 매출한 것이 아니어서 △△
- Text <mark>공장에 점유개정의 형태로 보관하였다'</mark>면 레이싱 기기는 '△△년
- Text 부터 '△△년 화재발생시까지 조사대상법인이 자산으로 인식하고
- Text 있어야 함에도 각 연도별 자산내역에서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
- Text <mark>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한 그 해 손금으로 인식하였음</mark>

- Text 2)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최종 쟁점 대표자에게로 귀속되는 실제
 - Text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 Text 유출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 Text 조사대상법인에서 쟁점 거래처로 결제된 매입대금이 <매입세금계산서
 - ^{Text} <mark>대금흐름 I > 과 <매입세금계산서 대금흐름 Ⅱ > 의 형태로 최종</mark>
 - Text 쟁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해
 - Text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자 지급액 중 상당금액을 일종의 에스크로
 - Text 목적으로 돌려받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Text 실제로 ●●● 대표가 **에스크로**1) 형식으로 자금을 보관할 목적이
 - Text 었다면 당초 전략적 제휴 협의안과 교육훈련 계약서 등에서 에스
 - Text 크로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계약의 관행상 너무나도 당연하나 이에
 - Text 대해서 언급된 내역을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없고,
 - Text 진정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매입대금을 보관코자 했다면 이해
 - Text 관계 없는 제3자, 중개인 또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
 - Text 하나 거래 당사자 법인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에스크로 했다는 것은
 - Text 상식적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
- Text 3) 무엇보다도 에스크로 형식으로 쟁점 대표자에게 대금을 보관할 목적
 - Text 이었다면 쟁점 거래처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쟁점 대표자에게 송금
 - Text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사유는 오직
 - Text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판단됨

Text 라. 핵심 증거자료 확보

Text O (심문조서 징취) 이러한 조사팀의 과세 논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Text 대표자로부터 심문조서를 징취하고, 사전에 거래상대방등의 신고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문조서 내용에 사실 관계를 충분히 진술
토록 유도함

Text 1) 제3의 중립기관(은행, 결제 대행사 등)이 거래대금을 잠시 보관해두었다가 물품등이 정상적으로 인 Text 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결제 서비스 방식

Text < 대표이사 ●●●의 심문조서 중 발췌 : '25.3.27. 실시 >

Table	2020.10.13.~2023.12.31.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융거래 흐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 2021. 6. 24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합계 수취하고 아래 <표2>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흐름'과 같이 주식회사 에 원을 지급한 후 주식회사
Table	대표 → 을 거쳐 귀하에게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대표 의 계좌에서 공급가액 을 출금한 후 을 거쳐 귀하에게 다시 입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Table	답 은 제 일을 도와준 믿을만한 사람이었고, 과 일을 하면서 아직 결과물이 보이는게 아니었으므로 일단은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지급할 계획으로 다시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게 회사에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될거라는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Table	4. 다음으로 2022.12.27.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의 관련된 거래에 대해 질문한다.
	문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며) 는 2022.12.27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 취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사실 어쩔수 없이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프린터나 인화지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외경비가 지출되나 경비 공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 를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Text (**(현장 채증을 통해 진술의 진위 파악)** 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Text 대용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 주변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고 과세 Text 논리를 정립함

Text 마. 과세근거를 굳건히 하여 과세처분 유지에 노력

Text 이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제출할 소명자료를 Text 명확히 특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요청하고 납세자에게 Text 과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Text - 조사항목에 대해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논리 및 핵심

Text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향후 불복 제기시에도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Text 선제적 노력을 기울임

Special

적출2

❖ 가지급금 인정이자 (항목코드: 10703)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적출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백만원을 미수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년 대표이사 ●●● 계좌에서 000백만원을 출금하여 ㈜●●●●●● 계좌를 거쳐 조사대상 법인 계좌로 회수한 내역을 확인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Table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u>자산을</u>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Text **2. 조사기법**

Text ○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0,000백만원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Text 으로 위장하여 인정이자 000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Text < △△△△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액 >

(백만원)

Table	특수관계자	기초 미수금	기중 회수금	기말 미수금	인정이자
	대표자	0,000	000	0,000	000

Text * '△△년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이자수익 신고함

Special

적출③

❖ 공사 소개비 수입금액 누락 (항목코드:) 10101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리베이트 수입 신고 누락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대상법인 가맹점 정보공개

Text 서에 따르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본사가 지정한 협력

Text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실제로 가맹점

Text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검토한 바, 가맹점과 협력업체 간 직접계약을

Text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음

Text ○ 협력업체는 매출처 확보가 매우 용이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

Text 본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나 조사대상법인은

Text 이러한 매출액이 신고된 내역이 없어 공사 리베이트 수입 누락이

Text 의심되었음

Table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33m²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6,319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33,000	3,300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3,500	350	NO. 25 P	711777	
사진기기3대	가맹본부	49,500	1.00	계약 또는 물품입고 시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인화용지	가맹본부	198				
비닐봉지	가맹본부	121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명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어닝, 외부공사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정보제공과 검수에 대한 대가로 3.3 m²당 일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포함>을 당사 또는 당사 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공사 협력업체 파악) 각 가맹점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매입 세금

Text 계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법인과 거래하는 본사 지정 공사 협력

Text 업체 명단을 파악함

Text O (금융조사 실시)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가맹점들의

Text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표 ●●●가 협력 인테리어

Text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리베이트 수입을 본인, 그의 가족 및 지인등의

Text 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 00백만원을 확인하고 부가

Text 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함

Text < 협력업체별 리베이트 금액 >

(백만원, 공급가액)

Table

е	거래처	수취방법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0	0	00	00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Diamond$	●●● 및 ◎◎◎ 계좌	0			0	0
	***	●●● 계좌로 수취	00				00
		●●● 계좌로 수취	00				00
		(100 , 000 , 1000 계환로 수취	00	0	0	00	0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및 심·판례등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Table 조심례 국심-2005-서-1931 (2006.11.17.)

청구법인은 쟁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해외 seller로부터 수령하여 국내 buye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 계좌가법인설립일 이후에 개설된 점, 대표이사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 이유 없음.

Table 조심례 국심-2003-중-3762 (2004.3.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최○○○이 ○○○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금액의 발생경위가 도매업(무역)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계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최○○○의 개인적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한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인터뷰 및 거래정황 확인) 조사 당시 리베이트 수입 누락과 관련한

Text 금융거래 내용을 제시하고 소명 요청하였고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Text 당시 대표자 본인이 혐의 내용을 인정하여 불복 제기 가능성 낮음

Special

적출④

❖ 과다 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1201) 인수가맹점에 대한 수익권 대가 과다 공제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대표이사 ●●●는 '△△.△월경부터 무인사진관 '△△ △△△△' (개인

Text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 △월 조사대상법인 (동일 업종)을 설립함

Text ○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Text 법인은 이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의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Text 000백만원을 수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있을 것으로

Text 보고 이에 대해 검토함

Text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내역 >

(공급가액,백만원)

Table 거래처		사업자번호	품목	합계	'22년	'23년	
	$\triangle\triangle\triangle\triangle\triangle$	000-00-00000	컨설팅 수수료	000	000	000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신고자료 확인) 개인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Text 없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법인에게 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Text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로서

Text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개입사업자 ●●●가 제공한 용역으로 가장했을

Text 가능성이 있어 제공한 용역의 내용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 검토함

Text ○ (가맹점 수익권 대가로 소명) 조사대상법인이 가맹점 본부로서 서버비를

Text 받고있는 가맹점 중에는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개인 사업자)가 초기에 모집한

Text 가맹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그 서버비 수익권을 법인

Text 사업자가 인수하고 그 대가로 '000'가 모집한 가맹점의 0년 간의

Text 가맹점 서버비 수입의 0/0(이하 '가맹점 수익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Text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을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Text 것이라고 소명함

Text ○ **(가맹점 내역 확인)** 가맹점별 개업시기 가맹계약의 당사자를 확인

- Text <mark>하여 실제 이와 관련된 가맹점이 00곳이고 해당 가맹점의 매출</mark>
- Text 액과 이와 연동한 서버비 수입을 확인하여 실제 수익권 대가는 '
- Text △△년~'△△년에 걸쳐 000백만원임을 확정하여 00백만원을 손금
- Text 부인하였으며 실제 서버비 수익권 대가의 귀속시기와 다르게
- Text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백만원을

Text 불공제함

Text < 인수가맹점 수익권 내역 >

(백만원)

Table

Э	구 분	합계	'20.2기	'21.1기	'21.2기	'22.1기	'22.27	'23.17	'23.27
	①총서버비 수입	000	00	000	000	000	000	00	00
	② 수익권 인수대가 (①× 4/7)	000	00	00	000	000	00	00	00
	③ 세금계산서	00	_	_	_	_	000	000	000
	차액(③-②)	00	△00	△ 00	△000	△000	000	00	000
	매입세액 불공 제	00	_	_	_	_	00	00	00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익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숙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급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ext 다. 명백한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Text ○ 조사대상자는 조사팀에서 제시한 법률을 인정하고 이견 제시 없음

Special

적출5

❖ 가공인건비 (항목코드: 1050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대표자 또는 직원들의 가족 등을 직원이나 사업소득자로 등재하고

Text 허위인건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착안하여 이에 대해 검토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조사 착수전 인건비 및 사업소득자 명단에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조기에 Text 파악하고 동종업종 근무 경력, 출퇴근 가능 거리 거주 여부 등에 대해 Text 확인

Text O (실제 근로제공 여부) 미리 파악한 가공 인건비 혐의자 명단과 현장에 Text 임하여 확인한 회사 조직도 및 좌석 배치도 등을 대사하여 실제 업무 Text 수행 여부(사용 pc등)를 확인한 결과, 거래처 대표, 그 자녀에게 지급한 Text 허위 인건비 00백만원을 적출함

Text (그 (금융거래 확인) 명확한 과세 근거 확보를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Text 조사대상 법인 계좌의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검토하 바 허위 인건비임을 Text 확인함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ext ○ 관련 심판례를 검토하여 과세가 타당함을 입증

- 심판례 등에 따르면 단순 급여 명목 지급 사실만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Text 것은 아니며 그에 상응하는 근로제공대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공

Text 되어야 함

Table

조심례 조세심판원 2016거0732 (2016. 6. 29)

급여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여동생 명의의 적금계좌로 매월 적금액 상당액이 이체되는 등 실제로 쟁점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본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Table

조심례 조세심판원 2017중1506 (2017. 8. 14)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 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